

# 외국인 개인의 대만 투자 및 회사 설립 완전 가이드

(적용 대상: 외국 여권을 소지한 자연인이 개인 명의로 대만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, 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예시로 설명합니다.)

## 적용 범위

### 적용 대상

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자연인이 개인 명의로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.

### 적용 제외 대상

홍콩·마카오 주민, 중국 본토 주민,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투자는 각각 별도의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.

## 제 0 단계: 투자 전 사전 계획 및 기본 신원 준비

### 0.1 사전 검토 핵심 사항

정식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, 먼저 아래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추후 수정이나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- **회사명:** 중국어 회사명 3~5 개, 영어 회사명 1 개를 미리 준비합니다. 영어명은 은행 계좌 개설 및 수출입 업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**영업장 주소:** 해당 주소의 건물 용도가 실제 영업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타이베이시는 중요합니다.
- **지분 구조:** 주주 명단과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. 필요하다면 외국인과 대만인 간 지분 비율도 함께 정리합니다.
- **중요 의사결정 사항:** 누가 회사의 책임자(이사/대표자)가 될지 정합니다. 외국인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으나, 은행 계좌 개설 시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**자본금 계획:** 초기 운영자금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 결정합니다.
- **취업허가 기준:** 외국인 책임자 또는 외국인 매니저 자격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, 자본금을 NT\$500,000 이상으로

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. 이는 신설회사에 대한 노동부 기준을 충족하기 쉽고, 첫째 매출 요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- **영업 항목:** 의료기기, 여행업 등과 같이 특허·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## 0.2 외국인 통일번호(UI No.) 신청

회사 설립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, 외국인 투자자는 먼저 통일번호(UI No.)를 신청해야 합니다. 이는 대만에서 외국인의 신분번호로 기능합니다.

- **관할 기관:** 내정부 이민서(NIA) 각지 서비스센터
- **용도:** 납세, 은행 계좌 개설, 각종 등록 절차에 사용됩니다.
- **신청 방식:** 본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- **필요 서류:** 여권 원본, 여권 사본, 신청서

## 0.3 대만 대리인 위임(POA / 공증 / 인증)

투자자 본인이 절차 전 기간 동안 대만에 체류할 수 없다면, 대만의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.

- **관련 기관:** 대만 재외공관(TECO) 또는 대만 법원 공증처
- **필요 서류:** 여권, 위임장(Power of Attorney, POA)
- **인증 방식**
  1. **해외에 있는 경우:** 현지 공증인을 통해 공증을 받은 후, 가장 가까운 대만 재외공관(TECO)에서 인증을 받습니다.
  2. **대만에 있는 경우:** 대만 지방법원 공증처 또는 민간 공증인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
# 제 1 단계: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

## 1.1 회사명 및 영업 항목 사전 심사

- **관할 기관:** 경제부 상업발전서
- **목적:** 중국어 회사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회사명을 6개월간 보류합니다.

- 제출 항목
  - 회사명 후보 1~3 개
  - 영업 항목 2~10 개
  - 전 주주의 신분증명서류 사본
- 실무상 권장사항: 주요 영업 항목 외에 “ZZ99999(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,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사업)” 를 함께 넣어 두면 향후 사업 확장에 유연성이 커집니다.

## 1-A 영업장 주소 사전 심사(타이베이션 등록 시에만)

타이베이션에 회사를 등록할 경우,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영업장 주소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- 관할 기관: 타이베이션 정부 도시발전국 / 건축관리처
- 목적: 타이베이션은 주거·상업 혼합 사용 규제가 엄격하므로, 해당 장소의 토지 용도 구분 및 건물 용도가 사무실이나 점포 사용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리스크 경고: 회사 등록이나 세적 등록이 일단 승인되었더라도, 불법 사용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NT\$60,000~NT\$300,000 의 과태료
  - 사용 중지 명령
  - 기한 내 이전 명령
 실무상 인테리어 비용 손실 및 이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## 제 2 단계: 외국인 투자허가 및 자금 심정

### 2.1 외국인 투자허가 신청

- 관할 기관: 경제부 투자심의회(DIR)
- 예상 소요 기간: 일반적인 경우 약 2~4 주
- 주요 신청 내용: 투자계획서 및 투자자 관련 자료

### 2.2 임대차계약 체결

회사명 예약 및 주소 확인이 끝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.

- **임차인 명의 기재 방식:**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.  
“○○유한회사 준비처 대표인: ○○○”
- **필요 첨부서류**
  - 건물 소유권 증명서 사본
  - 최신 연도 건물세 납부서
  -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

## 2.3 “회사 준비처” 은행 계좌 개설

- **관할 기관:** 외환 취급 지정은행
- **계좌 명의:**  
“○○유한회사 준비처 대표인: ○○○”
- **필요 서류**
  - 회사명 사전심사 승인서
  - 외국인 투자허가 승인서
  - 책임자의 3종 신분확인서류  
(여권, 통일번호 기초자료표, 최신 입국증명)
  - 회사 주소 증명
  - 은행 신고 인감
- **실무상 유의점:** 은행의 KYC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, **책임자 본인의 직접 출석**이 필수입니다. 외국인이 책임자인 경우 일부 공영은행은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, 외국인 투자에 익숙한 외국계 은행 또는 민영은행을 선택하는 편이 실무상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.
- **중요 실무 포인트:** 계좌 개설 시 **외화계좌와 대만달러 계좌를 동시에 개설**해 두어야 합니다. 자금은 먼저 외화계좌로 입금된 뒤, 이후 대만달러 계좌로 환전 입금됩니다.

## 2.4 외국인 주주의 자금 송금

- **송금인:** 주주 본인
- **송금 출처:** 해외의 개인 명의 계좌 에서 대만의 준비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.
- **송금 목적 코드:** 반드시 “310” (僑外資本投資) 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**금지 사항**
  - 주주가 아닌 제 3자가 대신 송금하는 것

- 대만 국내 자금에서 이체하는 것  
위와 같은 경우 투자심의회 자금 심정을 통과하지 못해 반송  
및 재송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## 2.5 외화 매도 및 잔액증명서 발급

송금 자금이 준비처 계좌에 입금된 후, 책임자는 은행에서 외화를  
대만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.

- **시점:** 송금 입금 후
- **절차:** 외화를 매도하여 대만달러로 전환한 뒤, 준비처의 대만달러  
계좌에 입금합니다.
- **필요 서류**
  - 외국인 투자허가 승인서
  - 통장
  - 계좌 개설 시 사용한 인감
- **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**
  1. 송금 통지서(원본 또는 사본)
  2. 외화 매도 전표(환전 영수증)
  3. 신청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

## 2.6 자금 심정 신청

- **관할 기관:** 경제부 투자심의회
- **절차:** 위 은행 서류를 제출하여 자금이 적법하게 송금되고  
대만달러로 환전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- **결과:** 자금심정책준함 을 발급받습니다.

# 제 3 단계: 자본금 검증 및 회사 설립 전 준비

## 3.1 회계사의 자본금 조사보고서

- **목적:** 대만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은 회계사의 조사 및 증명을  
받아야 합니다.

- **설명:** 투자심의회사가 자금 유입을 이미 확인했다더라도, 상업발전서에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별도의 독립 회계사 자본금 조사보고서 가 필요합니다.
- **필요 서류:** 통장, 예금잔액증명서

### 3.2 설립서류 작성 및 서명

일반적으로 회계사 사무소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.

- 정관
- 주주 동의서
- 이사 취임 승낙서
- 기타 등록 신청 관련 서류

또한 자금세탁방지(AML) 성명서 제출이 필요하며, 최종 수익적 소유자(UBO) 확인도 진행됩니다.

## 제 4 단계: 회사 설립등기(통일번호 취득)

- **관할 기관:** 경제부 상업발전서 또는 타이베이시 상업처
- **신청 내용:** 회계사의 자본금 조사보고서 및 전체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**결과**
  - 회사 설립등기 핵준함
  - 회사 등기표
- **중요한 이정표:** 이 단계에서 회사는 정식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고, 8자리 통일번호 를 부여받습니다.

## 제 5 단계: 영업인 설립(세적) 등록

- **관할 기관:**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세국
- **특이사항:**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책임자 본인의 서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,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**결과:** 세적등기 핵준함 을 발급받습니다.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송장 구매가 가능합니다.

## 제 6 단계: 송장 사용 개시(전자 / 종이)

- **현재 실무 추세:** 관리 편의성과 디지털화 정책 측면에서 전자송장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- **종이 통일송장을 사용하는 경우:** 책임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국세국에서 통일송장구매증을 발급받습니다.
  - 회사 등기서류
  - 송장 인감
  - 회사 인감
  - 신분증명서류

## 제 7 단계: 준비처 계좌를 정식 회사 계좌로 전환

- **관할 기관:** 최초 준비처 계좌를 개설한 은행
- **통상 필요한 서류**
  - 회사 설립등기 핵준함
  - 회사 등기표
  - 정관
  - 세적등기 핵준함
  - 회사 인감
  - 책임자의 2종 신분증명서류
- **절차 내용:** 계좌 명의에서 “준비처” 문구를 삭제하고, 정식 회사 계좌로 변경합니다.
- **중요 사항:** 은행은 인감카드 및 계좌 등록 정보도 함께 갱신합니다. 이후 자금 관리는 정식 회사 인감 및 은행 신고 설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## 제 8 단계: 설립 후 필요한 후속 절차

### 8.1 기본 행정: 공상증명서 및 노건보

- **공상증명서(工商憑證):** 회사의 디지털 신분증에 해당하며, 온라인 세무신고 및 노건보 관련 절차에 필요합니다. 가능한 한 조기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**노동보험 및 건강보험:** 외국인 책임자 1명뿐인 경우라도, 대만에서 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단위를 설립해야 합니다. 실무상 보통 자사 명의로 가입합니다.

## 8.2 취업허가

- **관할 기관:** 노동부 노동력발전서
- **중요 포인트:** 단순히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만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려면 **취업허가** 가 필요합니다.
- **대표적인 구분**
  - A 류: 전문적·기술적 업무
  - B 류: 화교 또는 외국인 투자사업의 경리인
- **실무상 장점:** 신설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**NT\$500,000 이상** 인 경우, 첫해에는 매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경리인 자격 신청이 비교적 승인되기 쉽습니다.

## 8.3 거류증(ARC)

- **관할 기관:** 내정부 이민서
- **신청 근거:** 취업허가서 및 재직증명 등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.
- **일반적인 유효기간:** 보통 취업허가 기간과 연동되며, 일반적으로 1~3 년 정도입니다.

## 8.4 기장·신고·지속적 컴플라이언스

대만의 세무제도는 비교적 복잡하므로, 회사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- 2 개월마다 영업세 신고
- 연간 법인세 신고
- 원천징수 신고
- 기타 지속적인 법규 준수 사항

따라서 회사 설립 후에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부터 전문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및 세무신고를 위탁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.